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제출도 허용하여 관련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또는 특별정비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종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물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7호·제11호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동의서”를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 설></u> 6. ~ 9. (생략)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물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7호·제11호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u> 6. ~ 9. (현행과 같음)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 ----- ----- -----

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②·③ (생략)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8호까지</u>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② (생략)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u>동의서</u> ④ (생략)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u>통합심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u> 8. (현행과 같음) 9. ----- <u>제7호까지</u>, <u>제7호의2 및 제8호</u>----- ----- -----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동의서</u> 또는 <u>전자서명동의서</u>. 이 경우 <u>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	---

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 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 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 면 <u>동의서</u>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 절차 등) ① ----- ----- ----- ----- ----- ----- - <u>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u> ----- . <u>이 경우</u> <u>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u> <u>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u> <u>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4924